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“성주군 별고을 운동장”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 ○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10조 제1항 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개정(성주 별고을 운동장 사용료 신설)

<성주별고을운동장 사용료>

(트랙 및 필드 사용료) (단위 : 원)

사용목적		단 위	사 용 료			비 고
			1 일	오 전	오 후	
체 육 경 기	트랙	평 일	50,000	20,000	30,000	· 축구 경기는 1회 4시간 적용
		토·일·공휴일	70,000	30,000	40,000	
	필드	평 일	100,000	45,000	55,000	
		토·일·공휴일	150,000	70,000	80,000	
체 육 경기 외	트랙	평 일	100,000	40,000	60,000	
		토·일·공휴일	140,000	60,000	80,000	
	필드	평 일	200,000	90,000	110,000	
		토·일·공휴일	300,000	140,000	160,000	

(부속시설 사용료) (단위 : 원)

종류	기 준	사 용 료	비 고
음향시설	1회	30,000	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
	1일	60,000	
전기시설	1회	30,000	
	1일	60,000	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9.21.~2016.10.12)

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(제10조제1항 관련)

생활체육시설(테니스,정구,족구장)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 경기장별	기준	체육행사		체육 이외의 행사		비 고
		평일	토·일·공휴일	평일	토·일·공휴일	
테니스장	주간 (1면당)	15,000	30,000	20,000	35,000	1면 2시간당
정구장		15,000	30,000	20,000	35,000	
족구장		15,000	30,000	20,000	35,000	

※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량의 30% 가산.

축구장 사용료

(단위 : 원)

사 용 목 적	요 금		비 고
	평 일	토·일·공휴일	
체육 경기	100,000	150,000	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
체육 경기 외	200,000	300,000	

야구장 사용료

(단위 : 원)

사 용 목 적	요 금		비 고
	평 일	토·일·공휴일	
체육 경기	50,000	100,000	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
체육 경기 외	100,000	200,000	

성주별고을운동장 사용료

(트랙 및 필드 사용료) (단위 : 원)

사용목적		단 위	사 용 료			비 고
			1 일	오 전	오 후	
체 육 경 기	트랙	평 일	50,000	20,000	30,000	· 축구 경기는 1회 4시간 적용
		토 · 일 · 공휴일	70,000	30,000	40,000	
	필드	평 일	100,000	45,000	55,000	
		토 · 일 · 공휴일	150,000	70,000	80,000	
체 육 경기 외	트랙	평 일	100,000	40,000	60,000	
		토 · 일 · 공휴일	140,000	60,000	80,000	
	필드	평 일	200,000	90,000	110,000	
		토 · 일 · 공휴일	300,000	140,000	160,000	

(부속시설 사용료) (단위 : 원)

종류	기 준	사 용 료	비 고
음향시설	1회	30,000	
	1일	60,000	
전기시설	1회	30,000	
	1일	60,000	